제194회 거창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7.12)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이 창 환]

- 거창군 5시가스 공급시업 보조금 자원 조례안 -- 검 토 보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정이유

○ 경제성과 안정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주요대상 및 범위를 정함 (안 제5조)
 - O 사업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함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 O 본관. 정압시설설치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 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제8조)
 - O 보조사업선정. 조정 및 협의 등을 위하여 10명이내 구성

- 다.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및 중·장기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하여 정함 (안 제9조)
- 라. 보조사업 선정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마. 보조금의 교부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11조 ~ 제14조)
- 바.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하여 정함 (안 제15조.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O「지방재정법」제17조
 - O「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 3
- 나. 예산조치 : 300백만원(2014년 예산확보 예정)
-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 라. 예고기간 : 2013. 4. 22. ~ 5. 11 / 의견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 19조의 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 여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 원하는 조례안으로서
-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 에서는 보조금지원대상과 본관설치비, 정압시설설치비

등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하며

- 안 제6조 ~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사업심의워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 안 제10조~ 제16조에서는 보조금 선정, 교부, 제재 등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해소나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나프타부생(副生)가스·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말한다.
-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말한다.
-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 한 도시가스를 용기,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 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말한다.
-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整壓器)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_ -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에너지 관련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함 (안 제3조)
- 나.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계획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
- 다. 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제9조)
- 라. 공공·건물·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 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바. 녹색건축물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정함 (안 제14조)
- 아.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O「에너지법」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54조
- O「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356백만원(2013년 본예산 156백만원 ,추경 200백만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5. 14. ~ 6. 3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O 이 조례안은 「에너지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에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등 에너지관련 시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안 제4조 에서는 에너지자립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5조 ~ 제9조까지는 에너지 자립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10조 에서는 공공부문.건물부문.수송부문 등 분야별에너지

추진 시책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 안 제12조 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에 대하여 정하고
- 안 제13조 에서는 녹색건축물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 안 제14조 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 안 제16조 에서는 에너지절약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녹색건축물 확대에 필요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군민 복리향상은 물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에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 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 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

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에 관련된 공익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지역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
 -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하며,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①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

- ·재산세 ·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제11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 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창호·단열재 및 설비 교체로 한정한다)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제6조(기존 건축물의 종류 및 공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를 포함한다)의 장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에너지 성능 및 효율 개선을 위하여 법 제 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 및 수선(창호·단열재 및 설비의 교체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 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 2.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장
 -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3.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기술사(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분야로 한정한다)
- 4. 대학에서 건축, 에너지 또는 설비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 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

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 야 한다.
 -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 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한다.
 -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 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 · 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 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 치단체출연연구워
 -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

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4.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5.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 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다. 풍력
 - 라. 수력
 - 마. 연료전지
 -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해양에너지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 자. 지열에너지

- 차. 수소에너지
-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산업통 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4.12]
-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3>
-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 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 · 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인정하는 기관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 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 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건물 중에서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시설 중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및 제한기간을 정하여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항제1호의 건물: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지
- 2. 제1항제2호의 건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통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로 지정된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정하는 기준 및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30]
-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냉난 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냉난방온도를 제한온도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냉난방온도의 조절 등 냉난방온도의 적합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거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30]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제15조(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시책의 마련 및 정비
 -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 제42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7.27]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 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 수 있다.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개청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검 토 보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법 시행령「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제12조)
 - O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예시
 - O '11.3.29 법률 개정으로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나.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안 제7조)
- 다.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 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
- 마.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을 하는 근거 신설 (안 제25조)
- 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안 제26조)
 - O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광고물,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근거 신설
 -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O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O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4. 18. ~ 5. 8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경상 남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서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5조 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신고사항관리 및 변경,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11.10.10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6조, 제 12조 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관광지.관광단지 등에 대해서만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 안 제13, 제14조 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지자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15~ 제18조 에서는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검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안 제25조 에서는 사이버교육이수자도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 거를 규정하며
- 안 제26조 에서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규정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경상 남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면 개정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66호, 2011.3.29,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 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 표시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광고물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물등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필요한 예산의 확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우수 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업자 및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등에게 지원계획의효율적 추진과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수 있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등은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도록 할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자치구에 각각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2.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광고물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u>다.

[전문개정 2011.3.29]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 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 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 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 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①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및 관련 산업의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두다.

- ③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3.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옥외광고산업의 육성 ·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지원
- 2.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3.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 4.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 5.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6.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사업
- 7.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 8.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9.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10. 제12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 11.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과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한다.
- ⑦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 ⑧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⑨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 치한 자
-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지 아니 한 자
-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3.29]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7.9]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7.9, 일부개정]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표시하는 것
-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

- 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하다.
-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 라 한다)
-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10.10]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 6. 혀수막
-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8. 벽보
- 9. 전단
-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 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있다.
-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10.10]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의 규격
- 2. 사용자재
- 3. 광고내용
-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과 허가증만을 첨부한다.
-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 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10.10>]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

- 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

제1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라.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

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 만을 표시할 수 있다.
-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하다.
-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 (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

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 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 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 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9.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 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1.10.10>]

-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신설 2011.10.10>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 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 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 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 위원의 성명·주소
-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 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10>]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7.9]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10.10>]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신설 2011.10.10>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①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1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10.10>]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하다.
-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 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 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10.10>]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10.10>]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3. 광고주
- 4. 옥외광고업자
-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10.10>]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 거·우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10.10>]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10.10>]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10.10>]

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2. 옥외광고업 종사자
-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3조에서 이동 <2011.10.10>]

제13장 과태료 <신설 2011.10.10>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6조에서 이동 <2011.10.10>

- 거청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_ - 검 토 보 고 서 _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안이유

- O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 공사비 지원
- O 각종 행위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전부 감면
- 상수도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선납 조항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 삭제 (안 제6조)
 - O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 산출시 포함시켜 함께 납부
- 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시설 수도요금 전부 감면 (안 제37조)

- 다. 옥내 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지원대상을 정함(안 제40조)
 - O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사회복지시설, 단독.공동 주택(100제곱미터 이하),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라.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13조, 제18조, 별표5)
 - 급수도용 등 부정행위 사전 차단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과 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30만원 ⇒ 50만원)
-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 정비 (안제4조, 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21조·38조, 「수도법 시행령」제53조의 2

나. 예산조치 : 2014년 2천만원 예산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미흡한 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 공사비 지원과 상수원보호구역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는 수도요금을 전부 감면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 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

- 안 제37조 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용 시설 수도요금 전부를 감면하는 등 요금의 감면사항을 규정하며
 - 안 제40조 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단독. 공동주택,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주택 등 옥내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 지원 대상에 대해여 규정하며
 -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급수공사비 분할 납부대상 범위 확대 등)을 개선 · 보완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옥내 급수설비 노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이 미흡한 급수관 개량(갱생 및 교체) 공사비 지원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들을 위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수도요금 전부 감면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수도법」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 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 1. 65세 이상인 자
-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 10.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

분하여 의료급여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과 수급권자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u>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u>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 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거청군 미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_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안이유

- O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 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등을 삭제하여 위탁가능한 모든 업체에 기회를 제공
- O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전면 위탁 관리함에 따라 읍·면장이 실시하던 시설 관리 및 점검 의무사항을 축소
- 「수도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지침 등을 조례에 반영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순화ㆍ 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안 제22조)
- 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관리에 따른 읍·면

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

- O 관리자 및 해당 읍·면장 → 관리자(안 제4조, 제8조)
- O 읍·면장 → 관리자(안 제7조)
- 다. 「수도법」등의 개정에 따라 법률조문, 환경부 조례 개정 요청사항 반영 및 관련지침 등에 의한 용어 정비
 - O「수도법」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
 - →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안 제1조)
 - 「수도법」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제25조) (안 제6조)
 - O 마을 신규입주세대에 수도설치 관련 입회비(마을발전기금) 요구 금지규정 신설(안 제14조)
 -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마을상수도 → 소규모수도 시설(안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안 제1조~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7조, 제19조, 제21조~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제47조・제55조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1,746백만원 반영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및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 관리에 따른 읍·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하는 등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2조 에서는 급수공사 신청시 설계 수수료 납부 조항을 삭제 하고
- 안 제37조 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이 용시설 수도요금 전부를 감면하는 등 요금의 감면사항을 규정 하며
- 안 제40조 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단독.공동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등 옥내노후 급수설비 갱생 및 교체비용 지원대상에 대해여 규정하며
- 그 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급수공사비 분할납부대상 범위 확대 등)을 개 선.보완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 시 위탁기간 연장조항 삭제 및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전면 위탁 관리에 따른 읍·면장의 시설 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일부 축소하는 등 현행 운영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과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 「수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 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 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 여야 한다.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업무내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2억원 이상, 건설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사무실 <의안번호 제2013 - 59호>

가 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7. 2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2

2.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검사기관을 현실 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개정된 「수도법」에 맞게 수돗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반영함
 - O 기능 : 수돗물 정기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O 위원자격: 수도관련 업무담당 소속공무원, 수도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안 제3조)
- 나. 수돗물 수질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관련 조항 정비함(안 제8조)
 - O 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검사기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함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O「수도법」제30조,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

나. 예산조치 : 2013년도 3,360천원 반영

다. 합 의: 기획감사실 합의되었음

라. 예고기간 : 2013. 4. 5. ~ 4. 24 / 의견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 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 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O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3조 에서는 개정된 수도법에 맞추어 수돗물평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 안 제8조 에서는 수돗물 수질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함

○ 검토결과

- 이 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돗물 평가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수돗물 수질 검사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관련법령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5.25, 2011.11.14>

-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1.11.14>
- ④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돗물의 검사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6]